

「주택연금 전문가 자문단 운영기준」 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 「주택연금 전문가 자문단 운영기준」

2. 제·개정 이유

- ☐ 주택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운영중인 「주택연금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내규화

3. 주요 제·개정 내용

- ☐ 보험계리·법률·마케팅·언론 등 주택연금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계·시장 전문가를 주택연금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위촉
- ☐ 자문이 필요한 사안 발생시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정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 자문 요청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4년 3월 7일까지 (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이메일) : 차장 강병문(kbm@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54
- 팩스번호 : 0505-036-0766

첨부 주택연금 전문가 자문단 운영기준 제정안 전문 1부. 끝.

주택연금 전문가 자문단 운영기준

제 정 2024.03.0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연금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에 관한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택연금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자문단은 주택연금부장과 주택연금 전문가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총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주택연금부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사전에 지명한 주택연금부 소속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은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는 주택연금부 소속 팀장으로 한다.

제3조(자문위원의 위촉) ① 주택연금부장은 보험계리, 법률, 마케팅 등 주택연금 관련 분야에서 학식,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학계와 시장의 전문가를 주택연금 전문가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최대 2년으로 하며, 연임 횟수는 최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문위원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연금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임할 수 있다.

③ 주택연금부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주택연금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하거나, 자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사안마다 선정하여 자문을 구한다.

③ 단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 이외의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자문 사안에 관한 자료, 통계 등을 자문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회의록) 간사는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자문의견

제6조(수당 지급) 자문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개진한 자문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세부사항)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연금부장이 정한다.

부 칙 (제 정)

이 기준은 2024년 3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 전문 각 조항의 세부적인 자구, 표현방식 등은 원안심사 등 내부 제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